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2. 5. 17 선고 2021가단592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등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4. 5.

판 결 선 고 2022. 5. 1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진도등기소 1995. 6. 26. 접수 제150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05. 6. 26.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피고 명의의 주문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그 등기경료일인 1995. 6. 26.부터 10년이 경과한 2005. 6. 26.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,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.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.

2. 근거

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최승준

<별지기재>

부동산의 표시[토지][고유번호: 전라남도 진도군 일아 35419㎡중 공유자 지분 5분의 1

-이상-

